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정 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정관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2007년 6월 25일 제정

2013년 6월 21일 개정

2017년 3월 16일 개정

2019년 6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근거) 본 정관은 재미대한체육회 정관 제 8 조(중앙경기단체) 및 제 71 조(규정 및 세칙)에 따라 체육회의 중앙경기단체인 재미대한태권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명칭) 재미대한태권도협회(이하 “본협회” 라 칭한다)는 영문명칭을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 라 칭하고 약칭으로는 KTA in USA 로 표기한다.

제 3 조(목적) 본협회는 미국 한인 태권도 경기종목을 대표하고 재미대한체육회 산하 지역체육회 가맹태권도경기단체를 규합하여 지휘·감독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소재지) 본협회의 사무소는 재미대한체육회 본부가 있는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협회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5 조(법인등기) 본협회는 미합중국 연방법과 본부지 주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6 조(사업) 본협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정통 태권도를 미국에 널리 보급하며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태권도인 및 그 단체를 통괄 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며 태권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태권도 경기운영의 기본 방침 심의·결정
- ② 태권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 ③ 태권도 경기대회의 개최·주관 및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육성
- ④ 각 지회의 지도, 육성 및 감독
- ⑤ 각 지회의 대회 개최 및 주관의 승인·지원
- ⑥ 미주 한인체전과 한국 소년·전국체전 및 각종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
- ⑦ 태권도 세미나, 자격증 발급, 심사 교육을 통해 우수 지도자 양성
- ⑧ 미주 태권도 지도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시행
- ⑨ 주미대사배 및 주미 총영사배 태권도대회 주최·주관
- ⑩ 국기원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⑪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서 위임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본협회 발전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 3 장 구 성

제 7 조 (구성) 본협회는 본부와 지역태권도협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재미대한태권도협회 본부)

- ①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한인 경기단체를 대표한다.
- ② 재미대한체육회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산하단체로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
- ③ 재미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지역체육회에 가맹한 지역태권도협회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로 둔다.
- ④ 본협회에서 인준한 지회(지역태권도협회)와 지회조직(Club)을 지휘, 감독한다.
- ⑤ 본협회는 인준된 지회 및 지회조직을 보호 육성 할 의무를 갖는다.
- ⑥ 본국에서 적용하는 대회규정 및 경기규칙에 준하여 규정을 제정 모든 대회 및 경기에 일관성 갖는다.
- ⑦ 본협회의 자격은 5 개 이상 지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지역태권도협회)

- ① 지회는 본 정관 제 8 장(지회의 승인 및 회원)에 의거 승인, 인준된다.
- ② 본협회 규정에 의거 회원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 ③ 지회로 승인된 지회는 본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④ 지회의 대표자는 본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⑤ 지회의 인준 및 탈퇴는 본협회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 ⑥ 본협회는 본 정관 제 8 장에 준하여 지회 규정을 정한다.

제 10 조 (승인된 단체의 회장 인준)

- ① 각 지회는 총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 보고서를 본협회에 보고한다.
 1. 단체장 보고서
 2.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3.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4. 총회의 회의록
- ② 각 지회는 회장선출 년도에 개최되는 총회결과 내용을 30 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협회에 보고한다.
 1. 단체장 변동보고서
 2.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3.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
 4.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 ③ 본협회의 승인된 지회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았거나 총회보고를 아니할때는 본협회절차에 의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④ 본 규정의 적용은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유효하다.

제 4 장 조 직

제 11 조 (조직) 본협회는 본부, 대의원, 이사로 조직한다.

제 12 조 (본부) 본협회의 본부는 임원, 감사, 분과위원회,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① 본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수석부회장 1 인
3. 상임부회장 약간명
4. 부회장 약간명
5. 전무이사 1 인
6. 사무국장 1 인
7. 사무차장 1 인
8. 기획실장 1 인
9. 재무 1 인

10. 이사 50 명이내

10. 감사 2 인

② 본협회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상설·운영 할 수 있다.

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2. 경기·기술분과위원회

3. 소청·상벌분과위원회

4. 교육분과위원회

5. 행사분과위원회

6. 심판분과위원회

7. 코치분과위원회

8. 여성분과위원회

9. 회원관리분과위원회

10. 출판·홍보분과위원회

11. 대외협력분과위원회

12. 차세대분과위원회

13. 장애인분과위원회

③ 본협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1 인

2. 고문 필요인

3. 자문위원 약간인

④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 지회는 명단을 본협회에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하며, 본협회는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협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 그리고 이사는 본협회양식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대의원)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 본부대의원, 위임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직 대의원

1. 본협회의 승인된 지회는 각 1 인의 대의원을 본협회에 둔다.

2. 지회의 현직 회장은 본협회의 당연직대의원이 자동으로 된다.

3. 당연직대의원은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본부 대의원

1. 본협회의 회장, 부회장과 전무이사는 본부대의원이며 그 자격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2. 지회의 단체장이 본부대의원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직대의원 자격만 주어진다.

③ 위임 대의원

1. 당연직대의원의 권한을 본정관 13 조 1 항에 의거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회의 전직회장, 현직부회장으로 한다.
3. 위임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개회 3 일전까지 본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임대의원의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 14 조 (이사) 본협회는 당연직이사와 추대이사로 구분하여 이사를 두며 상임이사 제도를 상설·운영한다. 또한, 본협회 실정에 맞추어 이사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이사

1. 본협회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본협회임원 모두는 당연직이사가 된다.
2. 임명된 각 분과위원장 모두는 당연직이사가 된다.

② 추대이사

1. 회장이 당연직이사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추대이사는 임명된 당연직이사 수의 2 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본협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상임이사는 이사의 동의하에 회장이 5 인 이상으로 임명 구성한다.
2.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 중에서 임명된다.

제 15 조 (임기)

① 회장의 임기 및 연임

1. 회장의 임기는 정기 2 년의 임기와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연임이 본 정관 1 회를 초과하여 2 차 연임부터는 회장선출 총회 21 일전 재미대한체육회에 총회감독관 참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7 월 1 일부터 후년 6 월 30 일까지 2 년으로 하되 회장선출 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시작과 종료 시기를 달리하였을 때에는 재미대한체육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장의 연대는 반드시 매 2 년마다 연속해서 가산된다.
5. 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6. 회장은 본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겸임할 수 없다.

②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 모든 임원, 분과위원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고, 회장을 제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④ 대의원 및 이사

1. 당연직대의원의 임기는 소속단체 대표자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이다.
2. 본부대의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본부조직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

3. 이사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당연직이사는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
- ⑤ 임원은 정관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을지라도 차기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본부임원의 선임)

- ① 임원, 감사 및 분과위원장
 1. 회장 1 명, 감사 2 명은 미주체전 기간중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기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촉위원
 1. 명예회장은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상임고문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2. 고문은 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
 3. 자문위원은 본협회의 취지를 동조하며 본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 ③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명단을 재미대한체육회에 14 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 17 조 (임원의 피임자격)

- ① 미국에서 최근 만 3 년(1,095 일) 이상 거주한 한인이어야 한다.
- ② 한국 및 미합중국 또는 단체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본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본협회 그 어떠한 임원에 선출, 임명될 수 없다.
 1. 어느단체에서라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 6 개월 전인 자
 2. 범법 행위로 인하여 \$5,000.00 이상의 금고형과 6 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하고 있는 자
 4.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은 자로 본협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자
 5. 역대 체육단체 회장선거시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회장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선거 관계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6. 본협회 정관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③ 회장 피임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본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 2 년(1 회) 이상을 완수한 자
 2. 덕망이 있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④ 상기에 명시한 날씨는 입후보등록 또는 임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8 조 (보선 및 직무대행)

- ① 보선 당선자와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연임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선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았을 때에는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본협회 선거세칙에 의하여 실시된다.
 2.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선출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없이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3. 본항 제 2호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총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투표하여 최고득표자가 회장직무대행을 한다.
 4. 회장직무대행이 없을 때에는 본 정관 37조(총회특례)를 시행하며 총회결정에 따른다.
 5. 회장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선거운영 세칙을 따른다.
 6. 불분명할 때에는 보선 및 직무대행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 ② 감사
 1. 감사 중에서 1명이 현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방법을 결정하여 추가로 1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감사 2명 모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30일 이내로 2명 감사에 대한 보궐 선출을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본항의 제 2호의 감사보궐 선출은 서면결의 총회로 할 수 있다.
- ③ 추대이사의 총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④ 임명직 임원
 1. 부회장을 총원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이 임명한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총원은 회장 직권으로 한다.
-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 ⑥ 본 조항(보선 및 직무대행)이 불분명할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 19 조 (직책별 의무 및 권한)

- ① 회원 및 임원, 이사 그리고 위원은 본협회의 정관 및 본협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 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본협회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각종 회의의 질문에 응답하고 진술 할 수 있다.
- ③ 회장
 1. 재미국 대한태권도협회를 대표한다.
 2. 본협회의 행정과 회계를 책임진다.
 3. 각종 회의소집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4.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최종확인 공포한다.
 5.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6. 재정, 업무 및 사업실적을 총회 때 보고한다.
 7. 회장은 본협회에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 ④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본협회의 행정업무상 특성에 대해 그 직무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
- ⑤ 전무이사
1.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2. 본협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3. 본협회 임원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4. 본협회와 지회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5. 회장 및 감사가 업무 보고서를 요구시 즉시 보고한다.
- ⑥ 사무국장
1. 전무이사를 보좌한다.
 2. 전무이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재무 유고시 재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각종 회의에 참석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보관 한다.
- ⑦ 재무
1. 본협회의 회계를 정리기록 관리한다.
 2. 회장 및 감사가 회계보고서를 요구할 때 그 즉시 보고한다.
- ⑧ 기획, 조정분과위원회
1. 본협회가 추진하는 연중 사업을 기획한다.
 2. 본협회의 연중 업무를 기획한다.
 3. 본협회의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 조정한다.
- ⑨ 경기, 기술 분과위원장
1. 본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 및 기술운영을 관장한다.
 2. 각종 대회결과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⑩ 소청, 상벌분과위원회
1. 본협회 소청, 상벌분과위원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본협회 정관 제 12 장(포상규정), 제 13 장(징계규정)에 의해 포상 및 징계대상자를 선별·심의한다.
 3. 본협회의 상벌세칙에 따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⑪ 교육분과위원회
1. 도장 운영, 지도자 교육 세미나등을 통해 우수 지도자를 양성한다.
 2. 본협회 총회를 통해 결정 된 각종 교육 세미나를 통해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다.

⑫ 행사분과위원회

1. 본협회의 수익 사업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기획 관장한다.
2. 각종 대회 및 행사 결과를 사무처에 서면 보고한다.

⑬ 심판분과위원회

1. 본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심판운영을 관장한다.
2. 심판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부 할 수 있다.

⑭ 코치분과위원회

1. 코치 세미나를 통해 우수한 코치, 감독을 양성한다.
2. 본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본협회 대표 감독, 코치를 임명한다.

⑮ 여성분과위원회

1.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2. 여성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한다.

⑯ 회원관리분과위원회

1. 각 지역의 도장을 관리 한다.
2. 태권도인들의 신속한 경조사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결속을 강화한다.

⑰ 출판, 홍보분과위원회

1. 본협회의 역사편찬 및 각 행사 자료를 출판, 홍보한다.
2. 본협회의 각종 대회 홍보물을 제작, 홍보한다.

⑱ 대외협력분과위원회

1. 본협회의 대외적인 교류를 위해 기획하며 섭외한다.
2. 재 해외동포 태권도협회와 업무관계를 공조한다.

⑲ 차세대분과위원회

1. 한인 청소년들에게 각종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의식을 함양 시킨다.
2. 태권도를 통해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 시킨다.

⑳ 장애인분과위원회

1. 장애인 태권도를 통해 믿음과 희망과 꿈을 고취 시킨다.
2. 장애인 태권도를 통해 한인 동포 사회의 봉사 참여 의식을 고취 시킨다.

㉑ 감사

1. 감사는 본협회의 재정회계를 감사한다.
2.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시 본협회의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 중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5.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 때에 보고한다.

㉒ 명예회장

1. 회장을 자문한다.
2. 본협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제 24 조 (권리 및 의무)

- ① 지회는 본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공인된 단체 명칭의 고유 권한을 갖는다.
 2. 지역에 있는 태권도 한인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3. 본협회에 건의와 소청 권리를 갖는다.
 4. 본협회가 위임 또는 승인하는 사업 및 대회에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는 권리 갖는다.
 5. 본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갖는다.
 6. 본협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그 권한을 갖는다.
- ② 지회는 본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본협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 할 의무를 진다.
 2.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체 상벌관계를 보고하여 업무공조를 한다.
 4. 본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한다.
 5.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 주관 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동시에 본협회에 보고한다.
 6. 대회참가 및 외부단체와 협약 또는 초청 관계를 본협회와 반드시 사전 합의한다.
 7. 본협회가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8.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 주관하였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사업결과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30 일 이내로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재미대한태권도협회(영문 포함) 명칭 또는 로고를 사용시는 반드시 본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10. 본협회에서 규정한 년지회비 \$200 불을 매년 1 월 30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지회는 의결권,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

제 25 조 (회기)

- ① 본협회의 회기를 만 1 년으로 한다.
- ② 본협회의 회기는 미주체전이 개최되는 6 월 마지막 주말을 기준으로 매년 7 월부터 익년 6 월까지로 한다.
- ③ 본협회 실정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서를 재미대한체육회에 제출한다.

제 26 조 (총회시기)

- ① 본협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규정된 회기종료 30 일전 이내에 개최한다.
- ② 본협회는 총회계획을 총회 개최일 21 일 전까지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 ③ 본협회는 총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총회보고서를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또한, 회장선출이 있는 총회보고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1. 단체장 보고서
 2.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3.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 4.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 5. 당 총회의 회의록
- ④ 본협회는 정관 제 13 조(대의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본협회는 총회감독관을 재미대한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7 조 (회장 인준)

- ① 본협회의 승인된 지회에서 새롭게 선출 확정된 단체회장은 다음과 같이 본협회에서 확인되며 그 자격이 주어진다.
 - 1. 회장확정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해당단체의 회장인준을 받는다.
 - 가. 단체장 변동보고서
 - 나.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 다.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
 - 라. 회장선출 회의에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 마.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 2.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본협회 선거참관인 보고서(선거를 참관하였을 시)에 의하여 본협회에서 인준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본 정관에 의거 인준된 단체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임기기간 동안 본협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지나 본 정관 제 10 조를 준수하여야한다.
- ③ 본협회에 보고된 모든 보고서는 본협회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제 5 장 대의원총회

제 28 조 (구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 정관 제 13 조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9 조 (대의원 구성방법) 대의원 총회(정기 및 임시총회 포함) 개최시마다 구성하며, 그 임기는 다음총회 개최 전일까지 한다.

제 30 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선거관리 위원장 인준 동의에 관한 사항
- 5. 지회 승인 및 퇴출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

6. 본협회의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 31 조 (소집) 본협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또는 서면결의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 대의원총회

1. 본협회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회식을 기준으로 만 1년 주기로 한다.

2. 매년 규정된 회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0일전 이내에 개최 한다.

3. 장소는 다음과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회장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회식 전후로 한다.

나. 미주체전이 없는 년도에는 본부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대의원 2분의 1(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권자는 접수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재적이사 2분의 1(과반수)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소집권자는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

4. 본 정관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

5. 장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 전국을 순회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서면결의대의원총회는 본협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본협회 규정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규정 또는 정관과 상반되는 의제는 서면결의대의원총회소집으로 할 수 없다.

2. 서면결의대의원총회 의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3. 의제에 대한 결의는 재적대의원 2분의 1(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4.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하여야한다.

가. 긴급을 요하는 사유

나.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

다.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서면결의대의원총회의 결과를 모든 대의원과 이사에게 서면(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총회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이메일을 포함한다)을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된 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④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총회개최 일시는 본협회 규정에 명시한 시일 이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제 32 조 (안건)

① 회장은 총회의 의제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의제가 된다.

1. 대의원 3 인 이상 동의를 얻어 문서로 본협회에 건의된 안건
2. 이사회에서 의결 된 총회상정 안건
3. 총회 도중에 긴급 안건을 부의 할 수 있다. 단, 긴급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의제가 된다.

② 개인 또는 1 개 단체가 안건 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의 되어야 총회의제가 될 수 있다.

제 33 조 (대의원총회의 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2 분의 1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제확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1.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의결 찬성 수는 변경할 수 없다.
2. 정관규정과 상반되는 의제를 의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상반되게 의결하여야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3 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 확정된다.
3. 본 항 제 1 호 및 제 2 호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2 분의 1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확정된다.

② 의결방법은 의제별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당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총회에서 결정할 때는 그 시행 마감일이 함께 결의되어야 하는 것 원칙으로 한다.

제 34 조 (총회 의결 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① 본협회 회장은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당 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과 대의원은 그 의제에 결정권 및 의결권이 없다.

- 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징계사항
- 나. 금전의 수불과 재산의 거래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

③ 상기 제②항 제가호 및 제나호에 관련자는 표결 시 대의원 재적수에서 제외된다.

④ 심의과정이 없었던 징계결정은 최고 정지(자격정지, 직무정지)까지 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이사회 또는 상별위원회로 회부(하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총회운영규정 및 보고)

- ① 총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방법은 당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총회계획 및 결과를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제 36 조 (총회소집통보 및 공고)

- ① 소집을 요하는 통보에는 회의의 종류, 토의의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고. 본협회 명으로 한다.
- ② 선거가 있는 년도의 총회소집 공고 및 통보는 상기 내용과 선거내용 및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 ③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는 본협회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개최 30 일 이전까지 공고한다.
 - 2.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시 개최 1 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본협회는 지회와 이사에게 FAX, E-Mail, 우편 등을 이용하여 총회개최 21 일전까지 통보한다.

제 37 조 (총회 특례)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권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5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1.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해당 대의원 추천단체(소속)의 장 3 분의 1 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해당 대의원 추천단체(소속)의 장 3 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재미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 38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본협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39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사업결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제 규정의 개정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상정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
8. 제반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심의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0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3 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회 소집권자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재미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42 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청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해결] 과반수 출석의 정의

과반수 출석이라 함은 재적 이사 정원이 12 명이라고 한다면 6 명 이상의 아닌 7 명 이상이 참석해만 회의가 성립됨을 말한다.

제 43 조 (상임이사회 설치운영) 본협회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상설 운영할 수 있다.

- ① 상임이사 구성은 본 정관 제 4 장(조직) 제 14 조(이사) 3 항과 같다.
-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상임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또한,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한다.
- ④ 회장은 상임이사 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 일 이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상임이사회 운영과 의결의 효력은 이사회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할 수 있다.
- ⑥ 상임이사회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

제 44 조 (서면결의) 본협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의제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2. 서면결의 이사회 의 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하여야한다.
 - 가. 긴급을 요하는 사유
 - 나.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
 - 다.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라. 서면결의 이사회 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 45 조 (긴급처리)

-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소집 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이사회 소집결의로 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이 이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8 장 지회승인 및 회원

제 46 조 (지역태권도협회 설치) 본협회의 사업목적 및 수행을 위하여 미국 각 주 또는 주요 도시에 지역태권도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본협회의 인준된 지회("주" 또는 "카운티")는 가맹된 지역태권도단체를 회원으로 둔다.
- ② 인준된 지회는 본협회 대하여는 지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주", 또는 "카운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칭은 재미대한태권도 협회 OOOO 지부로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Taetaekwondo Association of OOOO 으로 표시한다.
- ③ 지회는 소관지역 내에서 구역별로 산하단체로 각 "카운티" 또는 "시"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 ④ 지회는 그 사무소를 지역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지회 규약은 본협회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지역체육회를 경유하여 본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협회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⑥ 본협회의 임원이 본협회 또는 지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협회 상벌규정 및 지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 ⑦ 본 조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협회 정관 및 재미대한체육회 정관등을 준용한다.

제 47 조 (지역태권도협회 구성 및 총회)

- ① 본협회가 승인한 지회에 가맹한 “지역태권도협회”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협회가 지역체육회에서 가맹 승인한 지역태권도협회를 지회로 가입승인 하였을 때 본협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협회에서 지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지역태권도협회를 지회로 둘 수 있다. 단, 본협회 정관에 의하여 “준 지회”로 되며 권리사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각 지회는 집행부와 클럽(CLUB)이 3 개 이상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
- ② 지회 총회의 구성은 본협회 정관을 준용하여 한다.
- ③ 지회가 3 개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구성없이 이사회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본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48 조 (지역태권도협회 승인 및 회장인준) 본협회의 지역적인을 특성을 고려하여 지회의 단체승인과 선임임원은 관할 지회의 소관이며 다음과 같이한다.

- ① 본협회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 설치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역체육회는 거부할 수 없다.
- ② 본협회는 지역체육회가 없는 지역에 지회를 임의적으로 설치·승인할 수 있다.
- ③ 본협회는 지역체육회에 승인 인준된 지역태권도협회가 있을 시 임의로 여타단체를 지회 승인을 할 수 없다.
- ④ 지역태권도협회 선임임원은 관할 지역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지역체육회는 지역태권도협회 선임임원 인준 시 본협회에 사전 조회를 할 수 있다.
- ⑥ 본협회는 의견을 조회하여 지역체육회에 확인 통보한다.
- ⑦ 지회의 인준을 받은 지역태권도 단체장은 해당 지역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보고하여야 하여 지회장 인준을 받는다.
- ⑧ 본협회는 지역체육회에서 인준한 선임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장으로 인준하여야 한다.
- ⑨ 지회는 지역태권도 단체장 인준신청에 시정사항이 있으면 2 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본협회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⑩ 지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9 조 (회원) 회원의 모든 소관은 지역태권도협회이며 본 정관을 준용한다.

- ① 회원자격
 1. 재미한인 및 한국계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2. 조부모 또는 부모 중 1 명 (1/4)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체육회의 취지를 찬동하며 모든 모임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자 이어야 된다.
 4. 소속 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구분을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회원은 제 1 항의 자격을 갖춘 각 지역경기단체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회원
 2. 명예회원은 본협회를 비롯하여 체육계발전에 공헌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회에서 그 자격이 부여된다.
- ③ 회원의 소속 및 지역
1. 모든 회원은 각 소속단체의 소정의 서류에 의하여 등록접수 한 단체에 소속된다.
 2. 등록된 회원이 만 2 년 이상 소속단체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의 거주지가 소속 관할지역 본부보다 등록하고자하는 본부가 멀었을 경우 (25 마일 이내는 제외) 관할 지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4. 회원은 1 개 단체에 소속되며 이중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5. 소속단체에서 타 단체로 이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가. 전 소속 단체에서 이적동의서에 의하여 이적할 수 있다.
 - 나. 거주지 이사로 의한 이적은 이사 거리가 50 마일 이내 일 때에는 전 소속단체의 이적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 다. 소속단체에서 만 2 년 이상 단체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단, 전 소속에서 활동기간 동안의 의무를 완료하였어야 된다.
- ④ 회원의 의무 및 권한
1. 본협회와 각 소속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출전할 수 있으며, 대표 팀 선발 대상이 된다.
 2. 본협회와 각 소속단체의 규정 및 의결한 제반사항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3. 본협회 또는 소속단체의 의무금을 납부 할 의무를 진다.

제 50 조 (지회가입승인서류)

- ① 구비서류
 1. 지역체육회 가입승인 1 부
 2. 지회장 이력서 1 부
 3. 집행부(임원) 명단 1 부
 4. 단체결성 총회 회의록 및 참석인원 명부 1 부
 5. 회의사진
- ② 본협회는 승인된 지역태권도협회에 승인증을 발급한다.

제 9 장 사 무 국

- 제 51 조 (사무국)** ① 본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 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협회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52 조 (사무국 구비서류) ① 본협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 관리한다.

1. 정관
2. 임원 및 고문, 자문위원, 이사 명부
3. 지회 및 지회장 명부(연락망)
4. 재정 출납장부
5.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
6. 자재 목록
7. 각종 회의록
8. 사업실적 기록부
9. 기타 공문서 발송 기록 및 접수 기록
10. 지회의 정관

- ② 모든 서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서류를 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 53 조 (자체 총회에 대한 보고서) 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

1. 회계 보고서(수입 및 지출결산서)
2. 자재 보유 현황보고서
3. 사업 실적 및 성과보고서
4. 지회 및 단체장 변동사항 보고서
5. 임원 변동 사항 보고서

제 10 장 자산 및 회계

제 54 조 (자산) ① 본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3. 회비
4. 공공단체의 보조금

- 5. 기부금 및 찬조금
- 6. 사업 수입금
- 7. 기타 수익금

제 55 조 (자산의 관리)

- ① 본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자산으로 한다.
 - 1. 기금
 - 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자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본협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 ③ 본협회의 기본자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 2.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
 - 3. 차입금도 해당 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다.

제 56 조 (사업계획 및 승인) 본협회의 연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7 조 (수입)

- ① 모든 수입금은 본협회 자산으로 한다.
- ② 모든 수입금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명의로 징수 및 모금되어야 한다.
- ③ 본협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임원회비
 - 2. 지회 년회비
 - 3. 지회 가입비
 - 4. 이사회비
 - 5. 본협회 개최 및 주최, 주관하는 대회, 행사참가비
 - 6. 벌과금
 - 7. 찬조금 및 기부금
 - 8. 본협회 사업수입금
 - 9. 재미대한체육회 보조금
 - 10. 기타 수입금
- ④ 본협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그 누구도 본협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할 수 없다.

제 58 조 (년회비) 각 항의 회비는 년 회비로 한다.

- ① 임원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지회비와 가맹비 및 지역체육회 회비와 가입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각지회의 년회비는 \$200 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1 월 30 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2. 가입비(가맹)는 \$200 이며 년회비를 가산한다.
- ③ 매년 정기총회까지는 차기회기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④ 지회비 미납협회는 본협회 의결권,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
- ⑤ 지회비 및 가입비(가맹)는 총회에서 결정,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59 조 (대회비 관리)

- ① 본협회 개최 및 주최, 주관하는 대회, 행사 참가비
 - 1. 본협회가 주관, 개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단체 또는 개인이 내는 참가비이다.
 - 2.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30 일 이내로 결산 후 본협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 3. 정기총회에서 행사(대회) 결과 및 결산내역을 행사별로 별도 보고한다.
 - 4. 미주체전의 경우 90 일 이내로 결산 후 이익금은 미주체전 법에 명시된 계산법에 따라 재미대한체육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 ② 벌과금
 - 1. 모든 징계에는 벌과금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협회의 징계 확정에 의한 벌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
 - 3. 징수된 벌과금은 본협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4. 징계기간이 해제되었어도 벌과금은 완납하여야 징계가 종료된다.
- ③ 찬조금 및 기부금
 - 1. 모든 기부금은 그 기부자의 명시이사 목적에 사용하고 잔여금은 본협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2. 찬조금은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협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 ④ 본협회 사업수입금
 - 1. 본협회는 제 3 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6 조(사업)의하여 수익사업을 한다.
 - 2. 사업별로 30 일 이내로 결산 후 본협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3. 정기총회에서 사업의 결과 및 결산을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자산관리는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 ⑥ 본협회에서 책정된 개인회비는 중복하여 산출하지 않으며, 만약 중복될 경우 높은 회비만 책정된다.
- ⑦ 모든 회계관리는 회계담당자(재무)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 ⑧ 회계담당자(재무)는 수입명세서를 기록·보관한다.

제 60 조 (예산집행) 본협회의 예산집행은 본협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집행한다.

- ① 모든 지출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에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지출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긴급을 요할시 회장 직권으로 \$500 이내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7 일 이내에 모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그 사용 내역을 문서로 밝혀야 한다.
- ④ 재 미국대한태권도협회 은행구좌에는 2 인 이상 서명으로 해야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 명으로 가능하다.
- ⑤ 모든 지출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수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회계담당자(재무) 다음과 같은 지출사항을 기록 · 보관한다.
 - 1. 수입 및 지출명세서
 - 2. 지출의 근원기록 (지출 승인서)
 - 3. 지출 근거(영수증과 수표사본)
 - 4. 은행 수표 출납서(Bank Statement)

제 11 장 회기 및 감사

제 61 조 (회기)

- ① 본협회의 회기는 매년 7 월 1 일부터 후년 6 월 30 일로 하되 정기대의원총회, 부정기대의원 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 ② 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
- ③ 본협회의 회기결산보고는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 한다.

제 62 조 (감사) 본협회의 재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감사로 구분한다

- ① 정기감사
 - 1. 본협회 감사는 회기감사를 실시한다.
 - 2.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받는다.
- ② 특별감사
 - 1. 회장은 분야별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할 수 있다.
 - 2. 감사가 회계업무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다.
 - 3. 본협회의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한다.
 - 4. 본협회가 주최 주관한 행사 및 대회에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감사를 요구할 때 부분 감사를 실시한다.
- ③ 감사는 감사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본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감사에 불응할 때나 감사 중 혹은 감사 후 결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 소집 또는

총회소집을 요구할 의무를 갖는다.

제 12 장 포상규정

제 63 조 (포상대상) 본협회의 포상규정은 본협회와 태권도 발전 등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때 포상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상벌세칙을 두어 시행한다

- ① 본협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태권도인 및 단체
- ② 본협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 외부인사 및 단체
- ③ 기타 태권도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로자
- ④ 총회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 64 조 (포상구분)

- ① 대내포상(공로)
 1. 본협회와 지회 그리고 회원에 준하여 포상한다.
 2. 회장 직권으로 체육인, 본협회와 지회에 포상할 수 있다.
 3. 포상에는 표창장, 표창패 또는 공로패 및 공로상장으로 하며 회장명의로 한다.
- ② 대외포상(감사)
 1. 본협회의 외부 인사에 준하여 포상한다.
 2. 회장은 본협회 태권도 사업에 협조한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한다.
 3. 포상의 표기는 감사패 및 감사장으로 한다.

제 65 조 (포상 추천과 심사 및 결정)

- ① 포상 추천은 대의원 및 이사의 추천으로 한다.
- ② 포상 심사는 본협회 상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③ 모든 포상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본협회 회장명의로 수여한다.
- ④ 회장 직권으로 수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장 징계규정

제 66 조 (징계의 구분) 본협회의 질서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규정에 의하여 상벌세칙을 두어 시행한다.

- ① 본협회는 징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퇴출
 2. 직위 해제

3. 직무 정지
4. 출전 정지
5. 벌금
6. 봉사
7. 집행유예
8. 경고

- ② 기타 징계 구분은 본협회 소청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각 지회(단체)의 납입금 미납자(단체)는 본협회 의결권,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

제 67 조 (징계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개인)는 징계대상이 된다.

1. 본협회의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본협회를 명예훼손 하였을 때
3. 본협회에서 그 어떠한 직책이든 본연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제 68 조 (징계건의)

- ① 본협회 이사와 대의원 중에서 3 인 이상의 동의하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대회 및 행사를 주최한 단체와 지회 보고서에 의하여 건의할 수 있다.
- ③ 모든 징계 건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에서 부의 상정할 수 있다.

제 69 조 (직위해제, 해임, 직무정지 및 자격정지)

- ① 선출임원(회장, 감사)의 직위해제(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의 동의로 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이를 결정한다.
- ② 회장이 매년 3 월까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되지 않았을 때에는 4 월 1 일부터 회장은 자동으로 직무정지 된다. 또한, 직무대행권자가 4 월 10 일 전까지 정기총회 소집을 공지하지 않을 때에도 직무정지가 된다.
- ③ 본협회의 지회는 의무 납부금 미납시 완납할 때까지 그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미납금 완납과 동시에 그 자격이 회복되며 미납기간은 2 년(2 회)까지로만 한다.

제 70 조 (퇴출) 본협회의 승인된 단체(개인)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출 대상이 된다.

1. 본협회 정관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2. 승인된 단체(개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협회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때
3. 본협회에서 승인된 단체(개인)가 내부분쟁으로 파행이 지속되어 건전한 체육풍토를 저해하고 본협회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초래하였을 때.
4. 본협회의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등 의무를 불이행하고 파행이 지속되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는 퇴출 대상이 된다.
5. 납입금을 2 회 이상 미납하고 이후에도 납입의사가 없을시 퇴출 대상이 된다.
6.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등 본협회의 회의에 2 년이상 불참할 시 퇴출 대상이 된다.
7. 총회의 의결로 퇴출 대상이 된다.

제 71 조 (단체 대표자(회장) 인준 취소)

- ① 단체 내에서 정당한 규정에 의거 회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단체장 인준이 취소된다.
- ② 다음 경우에 본협회의 서면결의 대의원총회를 거쳐 회장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체장 선출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단체장 인준신청 내용에 사후 하자가 있을 때
 3. 본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되었을 때
 4. 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 72 조 (징계 심의 및 의결)

- ① 징계심의는 본협회 소청 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한다.
- ② 징계확정은 본협회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③ 회장, 감사, 명예회장, 상임고문의 징계는 소집된 총회에서만 의결 확정되며 기타 징계는 서면결의총회로 할 수 있다.

제 73 조 (재심 및 사면, 복권)

- ① 징계를 받은 자는 본협회 소청 상벌위원회에 1 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심, 사면 및 복권은 소청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결정으로 확정한다.
 1. 사면 복권은 본협회 대의원 중 출석 대의원의 2 분의 1 (과반수) 이상 동의하였을 때
 2. 회장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총회에서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면 및 복권이 된다.
- ③ 모든 신청은 서면으로만 인정되며 시행된다.

제 14 장 선거운영

제 74 조 (선거운영)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① 회장은 선거일 45 일 이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 ②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서 추천을 통해 임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총무 1 인을 포함하여 5 인 이내로 한다.

제 75 (회장의 업무개시)

- ① 회장의 업무개시는 당선확정일 다음날로부터 한다.
- ② 신임 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임원을 임명하여 본협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76 조 (업무 인계 및 인수)

- 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차기 년도 집행부에게 사실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그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
- ③ 구 집행부 보직담당자는 새 집행부 보직담당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 보직담당자 임명 즉시 모든 실무에 관한 업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

제 77 조 (규정) 선거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본협회 정관 및 재미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선거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 15 장 정관 개정과 통합 및 해산

제 78 조 (정관개정 및 수정)

- ① 정관 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을 심의한다.
- ② 정관의 개정 및 수정안은 소집된 총회에만 상정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③ 현직 임원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 당시의 정관규정을 따른다.
- ④ 개정된 정관은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9 조 (통합 및 해산) ① 본협회는 각 호의 다음 사유로 통합 및 해산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통합 또는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 재미대한체육회의 중앙경기단체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산된다.
- ② 해산하였을 당시에 잔여 자산은 본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 16 장 부 칙

제 80 조 (중재 및 조정)

- ① 본협회는 대의원, 임원, 이사에 의해 시비가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협회 단체 내부의 모든 법정송사는 먼저 중재 및 조정기구가 그 문제점의 시비를 충분히 다루어 그 결과가 나온 후에만 가능하다.
- ③ 중재 및 조정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모든 법정송사는 중재재판(Arbitration)으로 한 한다.
- ⑤ 법정소송에서 재판포기 또는 재판부에 의해 기각 및 패소한자는 법정소송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81 조 (재적인수 제척) 본협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자격정지 된 자는 재적인수에서 제외된다.

제 82 조 (회의권자 및 발언권)

- ① 회의권자는 회의의 구성원이다.
- ② 발언권 신청은 회의권자에게만 있다.
- ③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각종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회의권자를 제외하고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 시켜야 한다.

제 83 조 (결의안 시행마감일)

- ①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안은 시행 마감일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행마감일은 대의원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 84 조 (결의 조치 및 기록)

- ① 결의안은 의장의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 한다.
- ② 본협회는 결의사항을 대의원 및 이사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한다.
- ③ 회의록은 반드시 본협회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 85 조 (기록) 본협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은 서류는 수정없이 기록하고 영구 보관한다.

1. 해당 년도 본부 조직명부
2. 지역경기단체 조직명부
3. 사업성과
 - 가. 본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 대회 계획과 결과
 - 나. 본협회가 행사 및 대회참가 계획과 결과

제 86 조 (시행세칙)

- ① 본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제·개정된 지회규정, 선거운영세칙, 상벌규정, 대회운영규정 및 경기규정 등은 본협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규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본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한 결과 개·수정·삭제 및 삽입이 있을 때에는 본협회의 결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본 정관 이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미대한체육회 정관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상례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7 조 (준용규정)

- ① 본 정관은 각 지회규정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의 규정을 이 정관에 맞게 개정하지 아니하여 이 정관과 당해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정관에 따라야 한다.
- ② 본협회 및 산하 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운영형식으로 한다.

제 88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2007 년 6 월 25 일)

단,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19 년 6 월 22 일)..